

벤처 투자조합

필수 법률강의



민보미 변호사

Contents



등록요건

벤처투자조합
결성 과정에서
주의사항



투자의무비율

투자의무비율
계산방법



행위제한

위반하기 쉬운
행위제한
사례 알아보기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례 알아보기



PART
01

“
등록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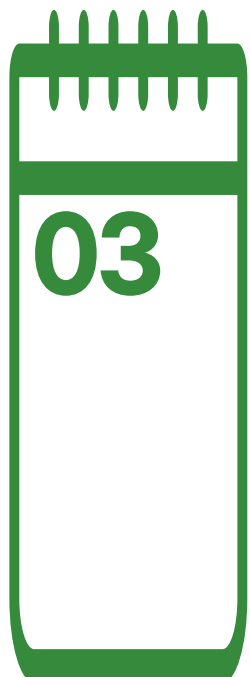


출자금 총액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수시납/분할납 -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



LP수 제한(49인 이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일부는 LP수 산정제외

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이 LP로 참여시

10%이상 투자기구의 각 출자자들이 LP 1인

10%미만 투자기구 자체가 LP 1인

벤처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LP수 산정제외



1좌의 금액/GP지분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GP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이상일 것



존속기간

5년 이상일 것

결성총액 100억원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창업투자회사인 GP가 10억원을 출자하고, A은행(전문투자자)이 20억원, B보험회사(전문투자자)가 20억원, C벤처투자조합(LP수 20명)이 20억원, 모태펀드가 15억원, D집합투자기구(LP수 10명)가 5억원, E일반법인 5억원, F개인 5억원을 출자했다면 LP수는 몇명일까요?

출자자	출자금액	출자비율	출자자수 산정 여부
A은행	20억원	20%	X
B보험회사	20억원	20%	X
C벤처투자조합	20억원	20%	O(20인)
모태펀드	15억원	15%	X
D집합투자기구	5억원	5%	O(1인)
E일반법인	5억원	5%	O
F개인	5억원	5%	O
합계	90억원	90%	23인

PART
02

“
투자의무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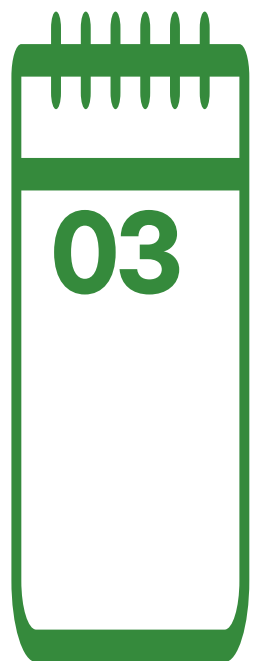
투자의무비율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GP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합계의 40%이상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 이상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투자의 방법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

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2. 개인, 개인투자조합 등이 3년이상 보유한 창업

기업의 구주인수



투자대상

1. 창업기업 2.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

4.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제외되는 자산

1. 결성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2. M&A/세컨더리 등 주목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출자금액증가!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사례) 결성 후 4년된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액
을 30억 증액한 경우

→ 1년에 10억씩 출자금액의 범위에 추가됨

감액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사례) 벤처투자조합이 청산한 경우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만큼 출자금액에서
감소됨

출자금액감소!

DOWN



*창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3년 이상

창투자 자본금 : 100억원

A벤처투자조합 : 출자금액 50억원

B벤처투자조합 : 출자금액 50억원

→ A 10억원이상, B 10억원 이상

총자산 200억원의 40%인 80억원

의무투자 필요

사례2

사례3

사례 1

*LLC운용 벤처투자조합 3년 이상

A벤처투자조합 : 출자금액 20억원

B벤처투자조합 : 출자금액 30억원

→ A 4억원 이상, B 6억원 이상,
벤처투자조합 합계 20억원 이상

의무투자 필요

A벤처투자조합(결성 1년차): 출자금액
20억원

B벤처투자조합(결성 2년차): 출자금액
50억원

→ 의무투자금액 없음



상장주식 투자제한

동일 GP운용 벤처투자조합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합계의 20%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음

투자목적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는 상장법인 투자에서 제외함

각 벤처투자조합

20%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음

투자목적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는 상장법인 투자에서 제외함



PART
03

“
행위제한
”



투자금지

- 상출집단
- 투자금지업종
(무도유흥주점업 등)
- 금융회사/PEF 등
(핀테크 등 예외조항)
- 이면계약방식



투자/거래 신용공여 금지

- GP/GP 임직원(배우자)
- GP 주요주주(배우자)
- GP계열사
- 벤처투자조합 주요출자
자 및 계열사
- GP가 동일한 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구



자금/자산

- 자금차입/지급보증/
담보제공
- 제3자를 위한 주식취
득/자금중개
- 투자한 업체로부터 정
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기타

-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 업무위탁 제한
(10%이상 출자자만, 조합원
전원동의/ 단, LP모집위탁
금지)
- 행위제한 회피목적
제3자와의 계약/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
하는 방법으로 거래



벤처투자 조합출자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함



투자/거래 신용공여 금지 예외사유

-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
- 벤처투자조합 해산 시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을 GP가 매수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



경영지배 목적투자 가능

벤처투자조합에서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가능함
(보유의무기간 및
매각의무기간 x)



주주간계약 체결

모든 종류 이면계약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식투자관련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설정하는
이면합의 이면계약체결
금지



상출집단 투자관련

투자 후 상출집단포함,
투자 후 상출집단회사
와 M&A 등으로 상출
집단으로 편입시
상출집단에 편입된 날
로부터 5년 이내 매각



계열회사 (1)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
업전문회사가 주요출자
자일때, 그 계열회사와
거래가능



계열회사 (2)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여 계열사가 된
회사에 대한 투자 가능



계열회사 (3)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
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목적
회사와 그 투자목적회사
가 투자한 회사

사례 1

**조합계정으로 상출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A벤처조합이 상장시장을 통하여
상출집단 주식에 투자
B벤처조합이 공모주 청약을 통하여
상출집단 주식에 투자
C벤처조합이 D벤처조합으로부터
보유중인 상출집단 구주를 매수

투자전 기업집단포털을 통하여
상출집단 여부 확인

사례 2

**특관자 투자**

A벤처조합이 주요출자자인
B의 계열회사의 신주를 인수함
C창투사가 운용중인 A벤처조합을
통하여 C계열사 신주 인수함

투자전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투자제한 기업인지 확인

사례 3

**특관자 거래(1)**

A벤처조합이 주요출자자인
B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구주로 인수함
C벤처투자조합이 GP 계열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구주로 인수함

구주인수 전
거래상대방이 제한되는 자인지 확인

사례 4



특관자 거래(2)

A벤처조합이 보유중인 주식을
GP 직원의 배우자에게 구주매각
B벤처조합이 보유중인 주식을
주요출자자인 C의 계열회사에게
구주매각

구주매각 전
거래상대방이 제한되는 자인지 확인

사례 5



행위제한 회피목적 거래

동일 GP 가 운영하는 A벤처조합과
B벤처조합 사이의 거래제한에 따라
A벤처조합이 C에게 보유중인 D사
주식매도, 같은날 B벤처조합이
C로부터 D사 구주매수

행위제한 회피목적
거래인지 확인

사례 6



업무위탁

벤처조합의 투자업체 발굴 등의
업무를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주요출자자 B사에 위탁
벤처조합이 제3자에게 LP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

업무위탁여부 확인
위탁시 절차 준수



자금차입

A벤처조합이 업무집행시
조합운영경비를 차입

B벤처조합이 수탁관리보수/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차입

조합이 자금차입하지
않도록 확인



유사수신행위로 조합원 모집

A벤처조합의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 및 일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모집

출자자모집시
원금보장약정 금지



제3자를 위한 주식취득

A벤처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 당일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 중개

금지되는 주식중개
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A벤처투자 조합을 운영하는 창투자 B가
신규펀드 출자자 모집을 위하여 C에게
출자자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

→ 업무위탁 금지

사례2



사례 1

2020. 5. 4. A벤처조합이 창업기업인
B의 신주를 인수함

2021. 5. 8. B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지정

→ 2026. 5. 8.까지 매각의무 발생

사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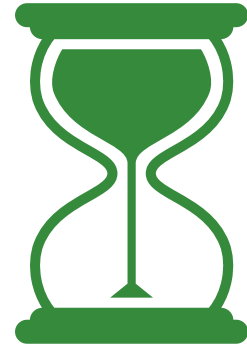
A벤처조합이 상장시장에서 B은행
주식을 매수함

→ 금융회사 주식취득 금지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여부
무도유형주점업
등의 투자금지
업종 여부



2

금융회사
PEF 주식여부
(핀테크 업종, 벤처투
자조합 등 예외사유)



3

투자하는 주식
이
GP/임직원/
주요주주/계열사
벤처투자조합 주요
출자자/계열사
GP가 동일한 조합
/집합투자기구



4

거래 상대방이
GP/임직원/
주요주주/계열사
벤처투자조합 주요
출자자/계열사
GP가 동일한 조합
/집합투자기구



5

제3자를 위한
주식투자 또는
자금중개 목적의
투자인지 여부



6

이면계약
투자 여부



PART
04

“
선관주의
”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조합재산에 대한 의무

자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A벤처조합에서 투자한 B사에 대하여 조합만기에 따라 고유계정으로 인수하면서 회계법인에 B사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금액을 낮게 산정하여 낮은가액으로 인수 후 높은 금액으로 매각

사례2

사례3

사례 1

A벤처조합에서 투자한 B사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 위반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A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한 B사 주식을 C에게 매도하면서 창투사에서 C로부터 별도의 금전적이익을 받음





“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활용**
”

법률/계약상 내용이 복잡하고
투자가 빈번히 일어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법률에 위반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 법률/계약 주요내용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면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Thank You!



springi@atinuminvest.co.kr

010-2652-8036